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17 발의연월일: 2020. 10. 14.

발의자:노웅래・양이원영・이수진비

윤재갑 • 이병훈 • 임종성

안호영 • 전재수 • 장철민

윤미향 · 송옥주 · 윤준병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으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 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020년 6월 기준 산재보험 실적용률 16.84%에 그치고 있으며, 입법 조사처,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.

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·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 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

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제4항 중 "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"를 "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(이하 "적용제외 사유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"을 "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"를 "적용제외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"로 하며,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- 2.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 업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경우

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

-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
 -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 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 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 |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처음 이

- 대한 특례) ① ~ ③ (생 략) 대한 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 유)
 -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이하 "적용제외 사유"라 한다)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장 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
 - 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 ·부상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 - 2.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
 - ⑤ -----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제 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 인한 경우에는-----

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 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 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. <후단 신설>

⑦ ~ ⑪ (생 략)

----. <단서 삭제>

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--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가 소멸한 날---------.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을 알려야 한다.

⑦ ~ ⑪ (현행과 같음)